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.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제정 2019.03.11

1. 목적

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는 동시에 종료된 계약 건에 대한 하도급 법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

- 1)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) 위원장은 구매 담당중역으로 한다.
- 3) 위원은 구매팀장, 품질팀장 등 관련 팀장으로 구성한다.
- 4)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3. 심의위원회 개최

- 1) 심의대상 하도급계약 건 발생시 마다 구매팀장의 발의에 의해 위원장은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.
- 2)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하도급계약 1건의 계약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
(단가계약은 품목별 1년간 예상거래금액 총액 기준)
 - 산차 : 하도급계약 1건의 계약금액이 10 억 이상인 계약 건
 - 모트롤 : 20억 이상
 - FC : 20억 이상
 - DDI : 5억 이상
 - 나. 사전심의 : 매월 1회 이상 정기 개최
 - 다. 사후 심의 : 분기별 1회 실시
 - 라. 기타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심의내용

- 1) 협력업체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
- 2) 협력업체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심의

- 3)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 사전 시정조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임직원 제재
- 4)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
 - 가.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
 - 나.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 여부
 - 다.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준수 여부
 - 라.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여부
 - 마.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 여부
 - 바.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
 - 사.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위반 여부
 - 아.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위반 여부
- 5)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심의
 - 가. 변경 계약 시 부당감액 등 법 위반 여부
 - 나. 지급기한내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
 - 다. 하자보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는 않았는지 여부
 - 라.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
 - 마. 기타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

5. 의결

- 1) 심의위원회는 위원 2/3이상의 출석,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) 찬반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6. 서류보존

- 1)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의 보관년한은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실천사항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

개별 계약 건 적법성 Check Sheet (사전 심의)

■ PO NO : ■ PJT 명 : ■ Item명 : ■ Supplier 명 :	■ 심의일 : ■ 심의자 : 1. 서명 2. 서명 3. 서명			
심의항목	심의 Point	심의결과		시정조치
		적합	부적합	
1.서면 계약서	-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이 기록되어있는가? (계약금액, 위탁일, 위탁내용, 납품일/장소, 대금지급방법, 지급일, 검사방법)			
2.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	- 경쟁입찰 최저가 견적업체 낙찰시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?			
	-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도급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였는가?			
	-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하도급대금을 실행예산대로 결정 하였는가?			
	-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였는가?			
	- 차후 수주(물량)건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계약금액을 낮게 결정하지 않았는가?			
	- 대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, 자료,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가?			
3.구매강제 금지	-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물품, 장비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는가?			
4.경제적 이익 부당요구	- 정당한 사유없이 찬조금, 협찬금, 지원금등을 요구하지 않았는가?			

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개별 계약 건 적법성 Check Sheet(사후 심의)

■ PO NO : ■ PJT 명 : ■ Item명 : ■ Supplier 명 :	■ 심의일 : ■ 심의자 : 1. 서명 2. 서명 3. 서명			
심의항목	심의 Point	심의결과		시정조치
		적합	부적합	
1.변경 계약	- 추가 자재 제작 및 작업 지시 전에 서면계약서나 제작/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는가?			
	- 물량 및 역무 추가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단가보다 낮게 변경계약 단가를 결정하지 않았는가?			
2.대금지급 지연	- 계약서에 약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였는가?			
	- 대금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?			
3.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	- 회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보수 책임을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는 않았는가?			
4.기술유용 행위	- 기술자료를 요구 시 기술자료요구서를 사전에 교부하였는가?			
	- 기술자료요구서에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기술 자료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?			